| 의안번호 | 제 815 호 |
| --- | --- |
| 의 결<br>연 월 일 | 2021년 월 일<br>(제 회) |

#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임동현 의원 등 7인 |
| --- | ---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

#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임동현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815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발 의 자 : 임동현, 박성원,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정상교 의원

## 1. 제안이유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안 제4조)

라.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사업 (안 제5조)

마. 심리적 위기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안 제6조)

바. 학교의 사업 (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자치과

라. 입법예고: 2021.8.19.(목) ~ 2021.8.24.(화)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단,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심리적 위기유아를 포함한다.)
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3. “전문상담인력”이란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청에 채용된 상담인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
4.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예산 확보
5.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유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교육·연수
4.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관련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5.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6.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적 위기학생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충청북도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심리적 위기학생을 발견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통합지원체계를 알리고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통합지원체계 운영이 심리적 위기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간에 심리적 위기학생의 정보 공유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9. 9.]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 · 학대 · 폭력 ·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 2021. 9. 24.] 제2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2014. 6. 11., 2015. 7. 24., 2015. 11. 18., 2018. 10. 30., 2019. 3. 19., 2020. 12. 31.〉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4. 6. 11., 2015. 7. 24., 2018. 10. 30.>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 · 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 복지지원 등의 의뢰

#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에 따라 심리적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